

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5항에 따라 강사의 자격과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분) 강사라 함은 본교의 전임교원은 아니나 담당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 2 에서 정한 교원을 말한다.

제3조(자격) ① 관할청의 「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강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.
② 본교에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를 강사로 임용한다.
③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세례교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갖춘 자를 임용한다.

제4조(결격사유) 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 강사로 임용될 수 없다.
② 재직 중인 강사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.

제5조(임용일) 강사의 임용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.

제6조(임용기간) ① 강사의 임용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교원(이하 “교원”에는 강사, 겸임교원 등을 포함한다)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사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1. 6개월 미만의 병가·출산휴가·휴직·파견·징계
2. 6개월 이하 연구년
3. 학기 중 교원의 직위해제·퇴직·사망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
4. 원격대학 (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)의 강사로서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7조(당연퇴직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.

1.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 사유에 해당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로 면직이 결정된 자
2. 재임용이 거부된 자
3.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달하는 자(이 경우 만 65세에 달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함)

제8조(교원인사위원회)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“인사위원회”라 한다)에서는 강사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.

제9조(강사 임용심사위원회) ① 학과장은 소속 학과 강사의 신규채용·재임용 등에 대한 심사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강사임용심사위원회(이하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사위원회는 학과장 또는 원장을 위원장(당연직)으로 하며, 학과장(원장)을 포함하여 소속 학과 전임교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학과의 특성에 따라 심사위원 수를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10조(신규채용 절차 등) ① 강사를 신규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한다.

② 강사의 신규채용은 기초심사, 전공심사,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,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.

제11조(계약제 임용 등) ① 강사에 대하여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기간, 임금(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), 면직사유, 재임용 절차(임용기간 만료사실의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, 재임용 조건에 관한 사항 포함),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그 밖의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하여 임용한다.

② 강사에게는 신규임용일 이후 휴직·정직기간 등을 포함하여 총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되, 그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임용 절차 또는 신규채용절차에 따른다.

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3년의 재임용 절차 보장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강사에 대하여는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강사에게 통지한다. 다만, 3년의 재임용 절차 보장 기간이 만료되는 강사에 대하여는 총 3년의 경우 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을 신청할 수 없음을 통지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재임용을 신청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은 자가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해당 학과에 재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학과 및 인사위원회에서는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강사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 기간이 끝나기 30일전까지 통지한다. 이 경우 그 강사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한다.

⑥ 재임용 심사를 신청한 해당 강사의 재임용 여부는 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강사에게 지정된 날짜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다.

⑦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임용하지 않는다.

1. 별도로 정한 강사 임용 등에 관한 내규 및 학과에서 정한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
2. 계약으로 정한 면직 사유 등에 해당하는 자

제12조(면직사유 등)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면직 할 수 있다.

1.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
2.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

3.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
4.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·선동한 때
5.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·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

② 강사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할 수 있고, 제1·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학기가 종료되는 말일에 면직할 수 있다.

1. 교육과정 개편

- 가. 해당교과분야 이수학점이 축소되는 때
- 나. 수강체계가 필수에서 선택으로 전환하는 때
- 다. 해당 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모두 폐지되는 때

2. 정직 이상의 징계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
3. 학과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

- 가. 소속 학과 또는 학사조건의 폐지
- 나. 학과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
- 다. 담당 교과과정 또는 비교과정의 폐지

라. 제6조 제2항에 따라 강사임용이 필요하여 임용 후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

4. 본 교단에서 인정하는 이단 및 사이비 종교에 활동을 할 때

③ 재직 중인 강사를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, 제2항 제2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려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 받아야 한다.

④ 재직 중인 강사를 제2항 제1호·제3호의 각 목적에 따라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.

제13조(강의시간) ① 강사가 담당하는 주당 강의시간은 학기별로 주당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락하에 9시간까지 가능하다.

② 강사의 강의시간은 운영하는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강의시간을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.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.

③ 계절학기 담당과목에 대한 강사시간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.

제14조(근무조건 및 복무 등) ① 강사는 사립학교법 교육관계법령 및 본교에서 정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강사는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

③ 강사는 교내외 활동에 있어서 본교의 건학이념 및 윤리강령 등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.

④ 강사는 본교의 임용된 이후 본교 이외에 기관에 겸임하는 경우 소속 학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⑤ 강사의 사회보험(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.

⑥ 강사는 재임용절차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코자 하는 경우 적어도 학기가 시작되기 2개월 전(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전)까지 소속 학과장에게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해야 한다.

⑦ 강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강의 배정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5조(휴직)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휴직을 명할 수 없다. 다만,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한다.

1. 업무상 부상·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을 요할 때
2.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
3. 천재·지변 또는 전시·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
4.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
5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
6.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(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)을 입양(入養)하는 경우

② 강사가 임용기간 내에서 휴직을 신청하면,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.

제16조(징계) ① 총장은 5인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② 강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봉 이하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할 수 있다.

1. 사립학교법, 교육관계법령, 정관 기타 본교 제 규정에 위반하여 강사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2. 직무상의 의무를 불이행,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
3.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4. 본 교단에서 인정하는 이단활동 및 사이비 종교활동을 할 때
5.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
③ 총장은 강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을 거쳐 해당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.

④ 징계위원회에서는 해당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 한다.

⑤ 강사가 임용기간 중에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면직하려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7조(급여 등) ① 강사의 급여는 강의시수만큼 학기 단위로 산정한 후 학기중 급여와 방학 중 급여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. 개인별 시급 강사료는 임용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의료(강의수행분)와 강의운영수당 (강의 준비 및 연구시간, 평가, 학사업무 처리 등에 대한 수행분)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자세한 사항은 본교 강사료 지급지침에 따른다.

② 강의료는 강의시간 수행에 따른 대가를 말하며 개강일로부터 기산하여 강의시수만큼의 금액을 매개월 임금계산 기간으로 하여 지급한다. 단, 보강 없이 결강할 경우 강의배정시간에 해당하는 강의료와 강의운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③ 강의운영수당은 '강의시간'수행에 따른 강의료 외에 '강의준비 및 연구시간(강의계획서 작성 및 입력 포함), 수강 학생의 학습지도·평가·환류, 학사업무 처리 등'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무시간 산출이 어려운 일체의 시간을 포함하여 강의 운영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다.

- ④ 강사료는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강의가 있는 학기에 한해서만 방학기간까지 지급하며 임용계약기간이 1년 또는 그 이상이라도 강의가 있는 학기에 한해서만 방학기간 포함하여 지급한다.
- ⑤ 강의하는 과목이 폐강이 될 경우 1학점의 강의운영수당만 지급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사 임용계약서 및 본교 강사료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한다.
- ⑥ 강사에 대하여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⑦ 강사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하고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.

제18조(세부사항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폐지되는 규정) 이 규정 시행과 함께 「시간강사 위촉에 관한 규정」은 폐지한다.